

아주대학교 제18대 총장 임명을 위한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총장후보자의 자격 및 물색

가. 총장후보자의 자격 및 물색

- 1) 총장후보자는 학문적 소양과 윤리를 갖추고 리더로서의 덕망과 도덕성 및 신실성(信實性)을 겸비하고, 아주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며 탁월한 국제적 안목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학교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2) 제1항의 기본요건 외에 총장후보자 자격에 대하여는 천거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 3) 총장후보자는 천거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천거위원회가 물색하며 총장 후보자 수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

가.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 구성

- 1) 교내·외의 유능한 총장후보자를 물색하고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한 후 이사장에게 총장 후보자를 천거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이하 “천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천거위원회는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인 대표 위원	3인
나) 대학평의회 대표 위원	5인(교원대표 3인, 직원대표 1인, 학생대표 1인)
다) 동문 대표 위원	1인
라) 외부인사 대표 위원	1인
- 3) 천거위원회 위원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가) 법인을 대표하는 위원은 대우학원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한다.
나) 대학평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학평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다) 동문을 대표하는 위원은 아주대학교 동문 중에서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라) 외부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덕망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장과 대학평의회 의장이 협의하여 추천한다.

- 4) 천거위원회 위원은 총장후보자로 피추천될 수 없다.
- 5) 천거위원회의 각 구성단위는 이사장이 천거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날까지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
- 6) 이사장은 제5항의 기한 내에 추천되지 못한 천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추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접수된 위원만으로 천거위원회를 구성한다.

3

천거위원회 회의

가. 천거위원회 회의

- 1) 천거위원회의 1차 회의는 위원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되, 위원 중 최연장자가 주재하여 위원장을 선출한다.
- 2) 위원장은 필요시 천거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위원장 등

- 1)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처리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의 사회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천거위원회에는 실무와 기록을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다.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천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천거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사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위원회 운영원칙

- 1) 천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천거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천거위원회 위원은 업무처리에 있어 지연, 학연, 혈연 등 특정집단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천거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천거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위원 임명 전에 [별첨]의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가. 총장후보자 검증

- 1) 천거위원회는 물색된 총장후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 가) 비전과 구체적 발전계획 (구체적 실천전략의 심층 분석)
 - 나) 역량 (리더십, 행정능력, 경영능력, 변화대응력 검증)
 - 다) 업적 (과거 수행한 주요 업적에 대한 분석)
 - 라) 학문적 윤리 (연구진실성 검증)
 - 마) 기타 천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제1항 라)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천거위원회는 학문윤리검증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총장후보자 검증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 및 세부사항은 천거위원회 의결로써 따로 추가·삭제할 수 있다.

나. 총장후보자 천거

- 1) 천거위원회는 물색된 총장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자격 검증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날까지 이사장에게 천거하여야 한다.
- 2) 천거위원회는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타사항

- 1) ‘아주대학교 제18대 총장 임명을 위한 천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 연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2) ‘아주대학교 제18대 총장 임명을 위한 천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한다.
- 3) 천거위원회는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한 날로 자동 해산되며 천거위원회의 모든 관련 서류는 법인사무처에 귀속된다.

